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교수평의회), 02-970-6907

제정 2019. 3. 5. 개정 2020. 8. 25.

학칙개정 2021. 10. 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제19조의2,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9조의 및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학칙개정 2021. 10. 1.)
- 제2조(구성)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(이하 "대학평의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 - 1.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 교수 대표 7명
 - 2.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직원 대표 2명
 - 3. 대학회계직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대표 2명
 - 4. 조교협의회가 추천하는 조교 대표 1명
 - 5.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부생 대표 2명
 - 6. 대학원 원우회가 추천하는 대학원생 대표 1명
 - ② 제1항의 평의원 추천 방법은 각 구성단위에서 정한다.
- 제3조(임원의 구성 및 임무) ①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,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

- 서 호선한다.
- ② 사무총장은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.
- ③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, 대학평의원회 업 무를 총괄한다.
- 2.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.
- 제4조(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 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②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평의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 - 1. 평의원이 소속 단체 구성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
 - 2. 휴직 또는 휴학의 경우
 - 3. 타 대학 또는 기관으로 6개월 이상의 파견, 출장 또는 연구년인 경우
 - 4. 본인 의사에 따라 평의원의 직을 사임한 경우
 - ③ 제2항의 사유로 평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 후 14일이내에 각 구성단위에서 후임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추천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제5조(기능)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.
 - 1.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- 4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
- 5.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」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, 대학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
- 제6조(회의) ①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.
 - ② 정기회는 매학기 2회 열리며, 의장이 소집한다.
 - ③ 임시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,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 - ④ 의장은 회의 일시 및 안건을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알려야 하며, 대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및 고지하여야 한다.
- 제7조(의결정족수)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8조(심의 및 자문 절차) ① 총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한을 정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대학평의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자료 제출 및 보완 요청)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총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추가·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.
- 제10조(회의의 공개 등) ①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교직원,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한다. 다만, 대학평의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이 기록된

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, 이를 회의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- 2.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- 3.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및 공개한다.
- 제11조(회의 결과의 통보) 의장은 회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직원) 대학평의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13조(예산 지원)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등 업무 관련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세부 사항) 대학평의원회는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제정 2019. 3. 5. 규정 제46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55호, 2020. 8. 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)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